

서울특별시 마포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2008. 5. 21

제안자 : 행정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

개정조례안중 통·반의 조직 구성, 반상회 구성 범위, 통·반장 교육내용 등에 일부 미흡한 자구가 있어 수정하고자 함.(안 제2조, 안 제8조, 안 제10조의2)

서울특별시 마포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2항중 “10개반으로” 를 “10개반의 규모로”로 하고, 동조제3항중 “80세대로” 를 “80세대의 규모로”로 한다.

안 제8조중 “세대원으로” 를 “성년자인 세대원으로”로 한다.

안 제10조의2중 “사기고양을 위한” 을 “사기를 높일 수 있는” 으로 , “제반 비용을” 를 “제반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”로 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수정안 대비표

원 안(개정안)	수 정 안
<p>제2조(통반의 조직) ① (생략)</p> <p>② 1개통은 6개반에서 <u>10개반으로</u> 구성한다.</p> <p>③ 반은 40세대에서 <u>80세대로</u> 구성한다. 다만, 특수한 지역 사정이 있을 때에는 <u>수를</u> 가감할 수 있다.</p>	<p>제2조(통반의 조직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_____ <u>10개반의 규모로</u> _____.</p> <p>③ _____ <u>80세대의 규모로</u> 구성한다. _____ _____ <u>세대수를</u> 가감할 수 있다.</p>
<p>제8조(반상회) ① 반상회는 반내에 거주하는 <u>세대원으로</u> 구성한다.</p>	<p>제8조(반상회) ① _____ <u>성년자인 세대원으로</u> _____.</p>
<p>제10조의2(통반장 교육) 구청장 또는 동장은 통반장에게 업무수행 능력 증진을 위한 직무교육과 <u>사기고양을 위한</u>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교육에 소요되는 <u>제반 비용을 지원할</u> 수 있고, 통반장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.</p>	<p>제10조의2(통반장 교육) _____ _____ <u>사기를 높일 수 있는</u> _____ <u>제반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</u> _____, _____.</p>